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소비자단체 설립 및 등록 근거 마련 등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3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6. 4. 15.
3. 회 부 일: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정한 전문성과 설비·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금융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임원 등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2조의2(금융소비자단체) 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금융소비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u> <u>1.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u> <u>2. 금융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u> <u>3. 금융소비자의 교육</u> <u>4.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u> <u>5.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u> <u>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 해결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u>② 금융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u>

현행	개정안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u> <u>1.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것</u> <u>2.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것</u> <u>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u> <u>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단체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u>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소비자단체(이하 “등록금융소비자단체”라 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u>⑦ 국가는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건</u>

현행	개정안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u>한국소비자원</u>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u>소비자단체</u>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6. (생략) ④ ~ ⑥ (생략)	<u>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한국소비자원</u>,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u>소비자단체</u> 및 등록된 <u>금융소비자단체</u>----- -----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금융소비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¹⁾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등록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한 전문성과 설비·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한 금융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임원 등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상품은 일반 소비재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금융소비자단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피해상담,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금융 전문 소비자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별도의 금융소비자단체 등록제 도입의 적절성,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중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 규정의 불명확성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 제도와의 관계, 중복 등록 및 중복 지원 가능성, 관리·감독 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록, 등록취소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²⁾ 주요 사항별로 개정안에 따른 금융소비자단체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 「소비자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생략)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취소) (생략)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생략)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와 개정안의 금융소비자단체 비교 >

구분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단체 (개정안)
업무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1.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금융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금융소비자의 교육 4.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5.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 해결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록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등록취소 등 사후관리	거짓·부정 등록 시 취소, 등록요건 상실 시 보완명령 후 취소 가능	거짓·부정 등록 시 취소, 등록요건 상실 시 보완명령 후 취소 가능
보조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국가가 등록금융소비자단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 개정안의 금융소비자단체는 활동 대상이 금융 분야에 한정된다는 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는 점 등에서 현행 소비자단체와 차이가 있으나, 업무 범위·등록 요건·보조금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 금융상품은 일반 소비재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단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소비자기본법」상 등록소비자단체가 소비자문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동일한 단체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소비자단체와 개정안에 따른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될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등록 및 관리·감독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분산될 경우, 등록요건 심사·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측면에서 행정적 비효율과 관리체계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등록금융소비자단체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설비 및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핵심요건인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개정안의 경우 등록금융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의 활동 실적, 조사·연구·교육·상담 수행능력 등 전문성 판단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서 제시하여 등록 요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단체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특정 단체에 대한 중복 등록 관리, 동일 단체의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관리·감독상의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둘째,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중 하나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및 금융업권별 개별 법률에서 그 주체와 절차,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범위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요청 대상과 절차 및 법적 효과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우선, 표준약관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법은 표준약관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약관법은 ① 원칙적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

등”이라 함)가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되 ②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함)이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단체등에게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고 4개월 이내에 사업자단체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직접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수 있음.³⁾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 한편, 약관법의 일반적인 표준약관 규정 외에 금융 분야의 개별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업권별 표준약관의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법률에서는 ① 업권별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각 협회가 표준약관의 제·개정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② 금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이 약관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④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 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

< 법률별 표준약관 제·개정 관련 규정 >

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6	여신전문금융업 법 §54의3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표준약관 제·개정 주체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 업협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 금융협회
제·개정 절차	· 표준약관 제·개정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보고 · 금융위는 공정위에 표준약관 통보			
공정위 시정요청	·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변경명령	· 금융위는 각 협회에 표준약관 변경명령 가능 (자본시장법 외에는 공정위 협의 필요)			

○ 이처럼 금융업권별 표준약관은 제·개정 시 신고·보고 절차, 금융위

원회의 감독 권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등이
약관법의 표준약관과는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특히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표준약관을 직접 제·개정할 권한이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각 협회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구조임.

○ 그런데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에 ‘법률에 따른 표준
약관 개정 요청’을 포함하고 있을 뿐, 해당 요청의 대상이 되는 표준
약관의 범위, 요청을 받는 기관, 요청 이후의 처리 절차 및 요청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의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이 약관법에
따른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금융업권별 개별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요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금융
소비자단체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소비자단체가 「소
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소비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 아울러 개정안은 ‘표준약관 개정 요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약관법은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요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금융업권별 개별 법률에서도 표준약관의 제·개정 절차를 함께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 요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표준약관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금융소비자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범위, 요청의 상대방(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각 업권별 협회 등), 요청을 받은 기관의 조치 절차, 금융위원회의 변경명령 등 기존 감독 권한과의 관계, 요청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소비자단체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⁴⁾ 해당 법률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문적인 금융소비자단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소비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085호)

자단체 제도와 관계 및 표준약관 개정 요청 규정의 법 체계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